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2021년 부산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

부산광역시감사위원회
(청렴감사담당관)

목 차

1.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업무 부적정 ····· 1

2. 용지매매대금 납부기간 변경 정보화 처리 부적정 ····· 3

3. 정기(최종) 하자검사업무 소홀 ····· 4

4. 분리발주 대상 사업 계약 부적정 ····· 6

5.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분양 촉진 ····· 7

6. 용역감독 소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지연 ····· 8

7.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관리 업무 소홀 ····· 10

8. 영구임대주택 관리계획 수립 소홀 ····· 12

9. ○○리모델링 주택 건립 전기공사 감독 업무 소홀 ····· 14

10. 설계변경 계약심사 미이행 ····· 16

1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관련 절차 미이행 ····· 17

12. 임대시설물(아파트) 보수공사 배출 폐기물 관리 소홀 ··· 19

1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품의 사용계획서 미제출 등 보고 부적정 ····· 22

14.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건설폐기물설계 등 업무소홀 ····· 24

15. ○○○○부지 매입시 토양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조치 미흡 ····· 27

16.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자료 관리 소홀 ····· 29

17. 전산장비 임차료 집행 부적정 ····· 31

18. 업무용 PC 구매 부적정 ····· 33

19. ◇◇◇◇위원회 운영 소홀 ····· 35

20. ○○팀 운영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37

21. 매입임대주택 등 입주자 모집공고 개선 ····· 39

22. 민원사무 처리 소홀 ····· 41

23. 상공회의소 연회비 납부 회계처리 부적정 ····· 44

24. 정책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 46

25. 비전2030 및 중장기 경영전략 연계 조직·인력 관리 권고 ····· 49

26. 공무국외출장 여비 산정 및 정산 소홀 ····· 51

27. 영구임대주택 부속상가 관리 소홀 ····· 53

2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미준수 ····· 57

29. 주택임대 관련 사규 정비 소홀 ····· 59

30. 공공매입임대주택 매입 부적정 ····· 61

31. 지방세 신고납부 관리 소홀 ····· 65

32. 세무 업무 관리 소홀 ····· 68

33. 지연손해금율 변동관련 규정 명확화 ····· 71

34. ○○○커뮤니센터 조성 용역 계약 부적정 ····· 73

35. 계약포기업체 수의계약 배제 미이행 ····· 76

36.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대행 용역 절차 이행 소홀 ····· 78

37.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원권 이용 등 부적정 ····· 81

38. 외부강의 사전신고 소홀 ····· 83

39. 임원 개인 휴대전화 지원 부적정 ····· 85

40. 건강검진 시 복무 처리 위반 ····· 87

41. 산지복구설계서 변경 절차 이행 소홀 및 예산낭비 ····· 89

42. 계약심사 절감액 사용 부적정 ····· 90

43. 식생유지관리 계약방법 검토 및 관리 소홀 ····· 91

4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소홀 ··· 93

2021년 부산도시공사 정기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21.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10일간) 부산도시공사의 2018년 6월 이후 추진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감사에서는 부산도시공사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경영혁신 노력도 및 규제개혁,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의 정상화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 건강한 조직문화 저해 요인인 직장 내 괴롭힘(갑질)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 또한, 감사기간 내 외부전문가(회계사)를 감사에 참여하게 하여 감사의 전문성·실효성을 증대하였다.

○ 감사위원회에서는 부산도시공사 지적사항 58건(현지처리 14건 제외)에 대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하였다.

▢ 감사결과 내역

구분	행 정 상 (건)					재 정 상 (건/천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계	회수	추징	감액	기타
계	58	17	32	4	5	6/113,903	2/400	-	4/113,503	-
본 처 분	44	4	32	3	5	/	/	-	-	-
현지처리	14	13	-	1	-	6/113,903	2/400	-	4/113,503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업무 부적정

【기 관 명】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권 고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 정기안전점검 대상 106개소(제2종 61개소, 제3종 45개소)

2. 내 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자체 수행하면서 제3종 시설물(45개소)에 대하여 자체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았고, 정기안전점검을 담당부서(직원)의 시스템 등재 자격 미달의 사유로 타부서 시설물을 점검토록하고 타부서 직원을 책임기술자로 지정(점검시 특정직원 2명, 시설물 각각 92건, 14건)하는 등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게 운영하였으며,

나. 제2종 시설물(61개소)과 제3종 시설물(45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와 시설물별 체크리스트인 정기안전점검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토목분야 책임기술자가 건축분야인 임대아파트 시설물을 점검하게 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재 하는 등 정기안전점검업무를 부적정하게 시행함.

3.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 ○○○○처장)은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라 제3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안점검검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나.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에는 책임(참여)기술자를 명확히 하여 정기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다. 제2,3종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제출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총괄 역할을 명시한 업무조정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용지매매대금 납부기한 변경 정보화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 매매용지 : 친환경리조트1, 2 용지(160,110㎡, 1,000억원)

2. 내 용

친환경리조트1, 2 용지 개발사업자의 매매계약 일정 변경 요청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로 판단하여 면밀한 검토 없이 연장을 하였고, 개발사업자로부터 용지매매대금 납부방법 변경 요청(중도금 및 잔금 납부 일정을 2020.3.31.로 일시납)에 대하여는 중도금 및 잔금 납부 기한을 2020.2.28. 일시납으로 용지매매계약서를 변경하고는 경영지원실로 정보화 처리 의뢰를 하면서 납부 기한을 2020.3.16.로 하는 등 용지매매대금 납부기한 변경을 부적정하게 함.

3.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은

가. 개발사업자를 공모하여 사업시 제안서와 사업협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용지매매대금 납부방법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변경 용지매매계약서 내용으로 정보화(전산) 처리 하기 바라며,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정기(최종) 하자검사업무 소홀**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 미시행 현황

▷ ○○○○처 : 정기 3건, ○○○○처 : 최종 4건, ○○○○처 : 정기 43건

2. 내 용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3.하자검사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

나. 그런데도 부산도시공사 ○○○○처는 “국제산업물류도시(1-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6공구” 등 3건에 대하여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처는 “임대주택(개금2) 온수탱크 교체공사” 등 43건에 대하여 정기하자검사(1회)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처는 “부산현대미술관 건립사업 전기공사” 등 4건에 대하여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3.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 ○○○○처장, ○○○○처장)은

가. 건설공사를 준공하고 계약자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기 바라며,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분리발주 대상 사업 계약 부적정**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 오시리아 테마파크 기반조성공사(2공구) 등 2건

2. 내 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도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독립된 적정 시공을 통한 부실시공 방지, 품질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공사 시행 중 설계변경을 통하여 도급내역에 포함시켜 일괄 시행함.

3.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은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독립된 적정 시공을 통한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분리발주 하기 바라며,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분양촉진 권고**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권 고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 미음산업단지 미분양 현황(5필지) : 산업시설 4필지, 폐기물처리시설 1필지

2. 내 용

가. 부산도시공사「분양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분양 촉진을 위하여 분양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경영상 불가피할 경우 분양가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양촉진책이 필요한 경우 분양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데도 변경 검토를 하지 않았다.

나. 그리고 부산시의회 및 관내 주요언론보도 등에 따라 부산시로부터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의 분양으로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협조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용지가 장기간 미분양으로 남아 있음.

3.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은

가. 준공지구 장기간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분양규정」에 따라 실효성 있는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나. 특히, 부산시의회(5분자유발언) 및 언론보도에서와 같이 산업단지 내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 확보가 필요하므로 미분양 폐기물처리시설용지의 조속한 분양으로 추가 매립장이 확보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용역 감독 소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지연**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권 고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용역

▷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결과분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 등

※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2. 내 용

가.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용역의 제7차~제9차년도 조사결과 통보서 내용 중 '협의내용 이행현황'에 첨부된 사진이 매차년도 마다 조사일시가 다른데도 동일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등 부적정하게 작성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용역을 준공처리 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인 서낙동강 녹조저감 방안인 "○○○○○○장치 설치"를 "○○○○○○ 살포"로 변경 하였으나, 민원 및 조류제거물질 사용승인권자 등의 문제로 市에서는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조류제거물질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및 지침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공사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이 필요함.

3.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은

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서류에 따라 감독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 요율 및 사용절차 등)에 따르면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일정 규모(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별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 비율에 따라 매달 적립하여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자료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관리법」 제11조(관리의 이관)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나. 또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입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담금의 사용방법, 세부 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고, 미리 관한 구청장에게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여부, 적립금액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관한 구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도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16개 임대주택단지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하면서 적립대상 공공임대주택단지별로 매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년도별로 적립하였고, 일부 충당금을 임대주택단지별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검사일(2019.12.13.)부터 1년이 지난 동래역 행복주택에 대하여 5개월분 **백만원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등 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은

가. 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을 공공임대주택 단지별로 매달 적립하고, 공공임대주택 단지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지출하는 등 특별수선충당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영구임대주택 관리계획수립 소홀**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불편사항 해소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2018년, 2019년, 2020년) 11월말에 익년도(2019년, 2020년, 2021년) 임대주택 임대·관리 계획을 수립 하였고, 영구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나. 「부산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임대주택 관리부서에서는 매년 11월말까지 익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부산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시행내규」 제2조(관리계획 수립의 원칙) 및 제3조(관리업무의 범위)에 의거 관리계획을 수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월별, 연도별 구분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임대주택관리부서에서는 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책임점검(안전관리진단)의 대상 및 점검회수는 별표1에 정하고 있으며, 주택관리부서는 책임점검의 결과 위해가 발생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도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2019년~2021년 임대주택 관리계획 수립시 월별, 연도별 구분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관리계획에 입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책임점검(안전관리진단)의 대상 및 점검 횟수 등의 점검계획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시설별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영구임대주택 관리계획 수립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라. 또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2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 사항에 어린이놀이터가 안전진단 및 위생진단 대상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부산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시행내규」에는 안전진단 및 위생진단 대상시설에 어린이놀이터가 누락되어 있는 등「부산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시행내규」의 개정・검토가 필요하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은

가. 영구임대주택 시설물이 안전한 유지관리 및 책임점검(안전관리진단)이 될 수 있도록 「부산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시행내규」의 개정을 검토하고,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리모델링 주택 건립 전기공사 감독 업무 소홀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리모델링 주택 건립 전기공사가 발주 및 착공(착공일 : 2021.4.15)되어 현재 전기공사 시공 중에 있다.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 설비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1항에 특정소방대상시설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2항에는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 건립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착공내역서)에 전기공사와 무관한 소방 시설인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단독경보감지기 등 소방시설공사 내용이 일부 반영 되어 있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시공된 소방시설 공사 부분은 관련 법에 적합하도록 분리 발주 등 사업 추진 방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은

가. 미시공된 소방시설 공사 부분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적합하도록 분리 발주 등 사업 추진 방법을 재검토 하고,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설계변경 계약심사 미이행**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및 「부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3조(심사 대상)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로써 같은 규칙 제4조(심사의 요청)에 따르면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도 부산도시공사 ○○○○처 “◇◇◇◇기반조성공사(1공구)” 등 8개 사업은 당초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되어 변경계약심사 대상임에도 계약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은

관련법령에 해당 되는 사업장은 계약심사를 받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관련 절차 미이행**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①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지연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제17조(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59호, 2019.8.19. 일부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 종류별 발생 예상량, 분리배출, 재활용, 보관방법 및 처리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공사 착공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도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건립공사 등 5개소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기한인 착공일부터 44일~151일을 경과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②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 신고 미이행

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한 자가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50%이상 증가하거나,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에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처 □□□□ 건립공사는 건설폐기물 발생 예상량을 156톤으로 신고하였고 배출량이 291.16톤으로 신고량보다 50%이상 증가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세륜시설 운영으로 새로이 배출되는 건설오니에 대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③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지연

가. 「건설폐기물법」 제34조(보고, 검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59호, 2019.8.19. 일부개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관한 내용을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 걸쳐 배출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배출 및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실 □□□□ 건립공사는 준공 15일 이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보고기한을 138일 경과하여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를 하였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 (○○○○처장, ○○○○처장, ○○○○실장)은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59호 2019.8.19.)」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보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처리 방법별 분리 배출, 재활용 및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는 등 건설폐기물 배출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며,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임대시설물(아파트) 보수공사 배출 폐기물 관리 소홀**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개 선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가. 임대시설물 보수공사 계약내역

구분	계약업체	계약금액(천원)	대상	보수내역
2017.4.1.~ 2019.3.31	○○건설	560,823	영구임대주택 11개 공공국민임대 4개 행복주택 1개	[건축・토목분야] - 도배, 장판 교체 - 씽크대, 현관문, 창문 교체 - 방수 및 우수관 보수 등 [기계분야] - 난방배관 보수공사 - 퇴거세대 전면 보수
	□□건설	560,823		
	△△개발	471,537		
소 계		1,593,183		
2019.4.1.~ 2021.3.31	●●건설	2,697,961		
	■■건설	2,745,440		
	▲▲▲▲	626,100		
소 계		6,069,501		
2021.4.1.~ 2023.3.31	◍◍산업	829,855		
	▥▥건설	787,319		
	◎◎◎◎	801,459		
	▤▤산업	822,927		
	◉◉◉◉	942,021		
소 계		4,183,581		

나. 임대시설물 보수공사 내역

구분	공사건수			공사금액(천원)
	계	건축・토목	기계	
2018.6월~12월	1,139	1,139	0	2,092,554
2019년	3,413	2,077	1,336	4,938,190
2020년	3,771	2,544	1,227	5,837,946

2. 내 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같은 법 제17조(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합성수지(장판,스티로폼,비닐), 폐목재, 폐금속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자는 발생 예상량, 처리계획 등을 기재하여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의 발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59호 2019.8.19.)」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 공사 여부는 발생 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나 처리 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중 위탁 처리하려는 건설폐기물 총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배출 현장이 별도로 나뉘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단일 공사건으로 발주되어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분리 발주 대상이다.

나.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임대시설물(임대아파트)의 보수 공사를 건설폐기물 배출 시기 및 배출량 예측이 어려워 시설물보수업체(건축·토목·기계분야)와 수의계약 (계약기간 2년)으로 하고 유지보수전자시스템을 통하여 건(세대)별 수시로 보수공사를 시행 한 후 2~3개월간 보수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기성금)을 지급하고 있다.

민원의 시급성과 시설물 안전 관리 등 특성상 수시로 긴급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기에 보수공사 시 발생되는 건(세대)별 배출량이 5톤 미만으로 건설

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에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8.6월~12월 1,139건, 2019년 3,413건, 2020년 3,711건 보수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시설보수업체에서 혼합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시설물 보수공사를 하나의 단일 공사로 발주하였고 배출현장이 별도로 나뉘어져 있더라도 보수공사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합산하여 100톤을 초과하면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여야 하고, 배출량에 상관없이 폐목재, 폐금속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나, 보수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분리하지 않고 혼합 폐기물로 배출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 절차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3.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은

가. 「건설폐기물법」 제15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59호 2019.8.19.)」에 따라 임대시설물 보수공사 시행으로 발생될 건설폐기물 총량이 100톤이 초과할 경우 건설폐기물 분리발주하고

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처리 방법별 분리배출, 재활용 및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는 등 임대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미제출 등 보고 부적정**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품 사용 의무 대상

공사명	규모	착공일	준공일	사용계획서 제출일	재활용사용실적		
					보고일	재활용	순환골재 등
○○산업단지 조성공사	B=4~102m L=5,750m	2015.10. 1.	2019.12.27.	2018. 2. 1. (765일)	미보고		
□□도시개발 조성공사	B=6~38m L=15,165m	2015. 7. 1.	2019.12.27.	2017. 2. 6. (497.5일)	2018. 2.28	18,350	미기재
△△△△도시 조성공사	B=4~55m L=22,047m	2013.12.20	2019. 7.31.	미제출	2018.10.30	55,233	미기재

2. 내 용

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미제출 등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의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하고, 순환골재 등의 사용 용도 및 예상 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부산도시공사 ○○○○처 △△△△조성공사는 순환골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기한(착공일로부터 3개월이내)으로부터 ○○○○조성공사는 765일, □□도시개발조성공사는 497일 경과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②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 미제출 등 보고 부적정

가. 「건설폐기물법」 제34조(보고,검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부산도시공사 ○○○○처 ○○○○산업단지조성공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보고)하지 않았고, □□□□도시개발조성공사 등 2개소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실적을 기재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를 제출(보고)하였다.

3.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은

가. 「건설폐기물법」 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59호 2019.8.19.)」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품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순환골재 등 사용계획서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고,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건설폐기물 설계 등 업무 소홀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포장보수공사) 내역

공사명	공사기간	시공업체	공사내역		설계	설계변경(정산)	실배출
			아스콘포장	보도블럭			
○○2지구	2018.11.1.~12.20	㈜○○건설	9,315㎡	1,510㎡	0	98톤	121.5톤
□□4지구	2018.11.1.~12.20	□□건설	8,755㎡	2,370㎡	0	59톤	60.87톤
△△1지구	2018.11.1.~12.24	△△건설(주)	7,230㎡	1,120㎡	0	98톤	98.44톤

나.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 및 보고 내역

공사명	건설폐기물배출 신고내역				배출내역		신고기관
	신고일(신고인)	폐기물종류	신고량	처리업체명	배출일	배출량	
○○2지구	2018.11.16.(㈜○○건설)	폐아스콘	98톤	㈜부경이엔티	11.29/12.14	97.7톤/23.5톤	북구청
					계	121.5톤	
□□4지구	2018.11.23.(□□건설)	폐아스콘	59톤	건설환경㈜	12. 6.	60.87톤	사하구청
△△1지구	2018.11.16.(△△건설(주))	폐아스콘	98톤	㈜부경이엔티	11.29/12.14	34.44톤/64톤	사상구청
					계	98.44톤	

2. 내 용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또한 당초 분리발주 대상 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보다 추가로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여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건설폐기물 총배출량 100톤 이상)라면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발주자가 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설계)할 때 해당 건설공사에 발생이 예상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방법,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배출량이 100톤이 초과 할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100톤 미만이라도 분리발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 그런데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인 ○○2지구 등 3개 지구 포장보수공사 설계 시 ASP절삭 후 덧씌우기, 기존 보도블럭 헐기 등으로 건설폐기물이 발생함에도 폐기물 처리 내역을 설계 반영하지 않는 등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대상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네오건설 등 3개업체에 각각 공사 발주를 하였으며,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www.allbaro.or.kr)에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포장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총배출량 확인결과 ○○2지구 121.5톤, □□4지구 60.44톤, △△1지구 98.44톤으로 ○○2지구의 경우 건설폐기물 총 발생량이 100톤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인데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하지 않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은

가.「건설폐기물법」제15조 및「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59호 2019.8.19.)」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비용을 반영하고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도 최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고,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부지 매입 시 토양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조치 미흡

【기 관 명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권 고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토양환경보전법」 10조의2(토양환경평가) 및 같은 법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등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양수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 대하여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토양환경평가를 통해 오염이 확인된 경우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投棄)·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또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현재 소유 점유하고 있는 자가 같은 법 제15조(토양오염 방지 조치명령 등),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보고),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토양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한 후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 완료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

나. 부산도시공사 ○○○○처는 ○○조성사업을 위하여 □□□□ 부지를 2019.5.13. 매입하고 매입 이후 2020.11.17. 환경단체((사)△△△△)의 토양오염조사 참여 요청에 따라 2021.3.31. 토양오염 개연성 조사(조사비용 8백만원)를 하였고 조사(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하여 2021.6.21. 토양정밀조사 용역

(5천4백만원) 계약 체결하고 현재 토양정밀조사 진행 중이다.
토양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오염 정도, 오염범위, 오염토양의 양 등이 파악하여 오염 토양을 정화하여야 하며, 오염 토양 정화 완료 후 용지매매계약서 제8조(토양오염 발견시 오염토양 정화 책임에 대한 특약) 근거로 □□□□에 정화 관련 비용 모두를 구상 할 예정이다.

다. ○○ 조성사업 부지인 □□□□의 경우 1975년 2월~ 2020년 4월까지 46여년간 금속제품제조(열간압연 압축 및 인발제품)공장으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바, 매입(2019.5.13.)전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에 따라 토지 소유자인 □□□□이 오염토양 정화 책임이 있다

라. 그런데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매입 전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現 토지소유자인 부산도시공사가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하고 정화 후 정화 비용을 □□□□에 청구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은

가. 「토양환경보전법」 10조의2(토양환경평가)에 따라 대규모 공장 및 산업단지 등 토양오염 우려되는 지역의 부지 매입 시 토양오염 정화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양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오염부지 매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예방하기 바라며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자료 관리 소홀**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및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따르면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계약관련 정보, 수의계약 내역 정보, 재정정보,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도 부산도시공사 ○○○○실에서는 □□□□실 등 4개 부서에서 행정정보 사전정보공표 대상 101건 중 19건이 공개주기와 시기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전정보공표 자료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실장)은

가. 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에는 공표된 정보의 공표주기와 공표시기에 맞게 적기에 내용을 공개하기 바라며,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 연찬 및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전산장비 임차료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지방공기업법」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및 제23조(예산의 편성)에 따르면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지방공기업은 합리적인 원가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의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목·세목)”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는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전용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 또는 사장(이사장)은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세항 및 목 경비를 전용할 수 있으며, 예산을 전용할 경우 관련 절차를 준수(예산부서 심사 등)하여 전용할 수 있다.

나. 이에 부산도시공사 ○○○○실에서는 2018년부터 노트북, 프린터, 복합기 등 사무용 전산장비를 임차하면서 해당 사업의 성격에 맞게 사무관리비로 임차비용을 지출하고, 예산 전용시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다. 그런데도 부산도시공사 ○○○○실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사무용 전산장비를 임차하면서 예산 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당과목에 맞지 않게 사무관리비 성격의 임차료를 수선유지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실장)은

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예산 목적과 성격에 적합하게 집행하기 바라며,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 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업무용 PC 구매 부적정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종합계약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장 제1절 총칙에서 계약담당자는 물품계약시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 제3조(2단계경쟁 대상), 제5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제6조(2단계경쟁 제안요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1회 납품요구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매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개 이상의 업체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2단계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물품을 기준금액인 1억원 미만으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제10조(가격 제안) 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시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까지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2단계경쟁 방법으로 구매하면 나라장터 등록가격 대비 최대 10%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나. 이에 부산도시공사 ○○○○실에서는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132,840천원의 PC 구입 예산을 집행하면서 연간 PC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하여 발주하고 2단계경쟁 방법으로 PC구매를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했다.
그럼에도 2019년 1차 윈도우7 기술지원 중단('20. 1월)에 따라 1월에 노후 PC 7대를 교체 구입하고, 2차 업무용 PC 구입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2단계경쟁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PC 물품을 변경하고 모니터 할인을 적용하여 구매금액이 1억원 미만이 됨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전산장비를 일반 조달구매 방식으로 구입함으로써 예산절감의 기회를 놓친 사실이 있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실장)은

가. 업무용 PC 구입 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연간 PC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1억원 이상의 업무용 PC 구입시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해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라며,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 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 그리고 PC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동제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 및 소관 업무 자료에 대한 보안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위원회 운영 소홀**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부산도시공사「◇◇◇◇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회공헌활동 추진방침 수립 및 중요정책에 관한 자문, 사업 추진 활동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3인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며,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본부장, ○○○○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나. 그런데 부산도시공사 ○○○○실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019년의 경우 내규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은 ○○○○○○처장이 위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였고, 2020년의 경우 서면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외부위원 3명을 직접 개별 방문하여 심의내용을 보고하였으나 자문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 제출받을 뿐 내부위원은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심의·의결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실장)은

가. ◇◇◇◇위원회 운영 시 내규 등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규 정비를 검토하고,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팀 운영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국민체육진흥법」 및 부산도시공사 「◇◇◇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지역 체육의 진흥과 직장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도시공사에서는 ○○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같은 지침에 따르면 선수단의 기량 향상과 선수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합숙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공공요금, 기타 소모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매년 ○○팀 운영비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팀 운영·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있다.

매년 시달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출경비를 산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 예산에 편성하며, 지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지출예산을 상호 이용할 수 없으며, 부산도시공사 「회계규정」 제152조(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부산도시공사 ○○○○실에서는 2018~2020년 기간 중 지출예산 내역 산출기초 세부항목에 별도 편성된 사항이 없음에도 훈련장 시설 정비를 위한 공사, 사무가구 구입 등 ○○팀 운영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 기준 없이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또한, 대회 출전을 위한 출장일수,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숙소 체류 기간만큼 합숙소 운영비를 산정하여야 하나 매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실장)은

가. ○○팀 운영 시 관련 예산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적정하게 집행하여 주기 바라며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매입임대주택 등 입주자 모집공고 개선**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개 선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부산도시공사「임대규정」제9조(임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일정호수 이상의 국민주택 등 임대의 입주자를 최초로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일정호수"에 대하여 같은 규정 시행내규 등으로 별도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같은 규칙 제21조(입주자 모집공고)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내규의 "일정호수"는 100호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년 언론수용자 조사 통계표 자료에 따르면 종이신문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사례자가 89.8%에 이르고 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종이신문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의 주된 신청자격자가 저소득층임을 감안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 정보를 일간신문 매체에서 얻을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

다. 그런데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매입임대주택 등에 대한 입주자 모집 업무를 진행하면서 100호 이상의 모집 외에 최소 8호 입주자 모집, 최초 모집이 아닌 장기미임대 주택에 대한 수시모집 시에도 일간신문에 공고를 게재하는 등 2018년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총 18건 중 100호 이상 6건을 제외한 12건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100호 미만의 입주자 모집 공고의 경우 일간신문 게재를 지양하도록 내규를 명확히 정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업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은

가. 매입임대주택 등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일정호수 이상의 공고 건에 한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내규 정비를 검토하고,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민원사무 처리 소홀**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는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참여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 및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인·허가 서류 발급 신청 등 정형화된 서식을 통한 민원사무가 아닌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인 고충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8조 내지 제15조의2에 따르면 총괄기관(국민권익위원회)은 민원인이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 등을 지정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처리기관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처리기관을 지정하지 아니한 민원은 총괄기관이 민원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민원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등을 처리기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처리기관은 신청된 민원을 신속히 접수하고 접수된 민원의 종류에 따라 처리기간 등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참여포털에 입력하여 즉시 담당부서로 배정하고 민원을 배정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신속하게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참여포털에 입력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처리기간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국민신문고 민원의 처리기간

민 원 유 형	처리기간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14일 이내
고충민원(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7일 이내

나. 그런데 부산도시공사 ○○○○처 등 3개 부서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 중 일부 건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지연하여 처리하였다.

[표 2] 국민신문고 민원 지연 처리 현황

연번	민원내용	접수일	처리기한	처리일자	처리부서
1	부산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나요?	2018. 8. 1.	2018. 8. 9.	2018. 8.14.	○○○○처
2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 대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019. 6.27.	2019. 7. 5.	2019. 7.16.	○○○○처
3	오시리아 테마파크 공정률 및 개장일	2020.12.11.	2020.12.21.	2020.12.24.	○○○○처
4	반송지구 BMC아파트 101동 뒤편 하수관 관련 문의	2020.12.21.	2020.12.30.	2021. 1. 8.	○○○○처

또한, 부산도시공사 ○○○○실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www.bmc.busan.kr)에 고객만족센터 항목을 개설하고 하위 메뉴로 고객만족센터 안내, 고객서비스헌장, 자주하는 질문(FAQ), 고객의 소리(VOC), 익명신고 등 11종으로 분류하여 공사 업무와 관련한 불편·불만사항, 제안 등 온라인 민원처리 및 납부금 조회, 공사 경영 참여 등이 가능한 온라인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8. 6. 1.~ 2021. 5. 31.) 총 2,199건의 온라인 민원이 접수되었고, 다수의 민원인이 공사 업무와 관련한 불편·불만사항, 질의 등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어 “자주하는 질문(FAQ)” 메뉴에 민원인이 자주하는 질문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민원 편익을 위해 바람직하나, 관련 메뉴에 등록된 게시물이 전혀 없어 홈페이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 등 4개 부서장) 은

가. 민원사무는 반드시 정해진 처리기한 내 신속히 처리 하고, 공사 홈페이지의 “자주하는 질문” 항목은 민원 편익을 위한 내용으로 정비하기 바라며,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상공회의소 연회비 납부 회계처리 부적정**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상공회의소법」 제10조(회원)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13조(회원 등의 권리) ② 특별회원은 제22조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4조(회원의 의무) ② 특별회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제22조(의원의 선거) ① 특별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

나. 「부산상공회의소 정관」 제19조(선거권) ① 특별회원은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기(1개 사업연도를 2등분한 기간을 말한다)의 직전 2개 기의 회비 납부액에 따라 특별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 1인이 가지는 선거권은 4개를 초과 할 수 없다. ⑤ 특별회원은 의원선거인 명부 열람개시일 전일 오후 6시까지 납부한 특별회비는 제1항에 따른 회비 납부액에 합산한다. [신설 2019.2.26] 제21조(회비) ① 특별회원의 회비는 연간 1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선거권과 관련하여 회비를 추가로 낼 수 있다.

다. 이에 따라 2003.3.11. 부산도시공사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14년도 상반기까지 기타 영업외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연회비를 납부 하였으며, 2014년 부터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21.1.28. 부산상공회의소로부터 미납회비 납부 요청이 있어, 2021.2.3. ○○○○실에서는 미납회비 4,500천원(2018~2020년, 3개년도분)을 2021년 본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납부하였고, 2021.2.24. 개인 통장에서 1만원을 부산상공회의소에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부산도시공사는 제24대 상공회의소 선거에서 특별회원의 선거권 4개를 가지게 되었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실장)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과「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과목 구분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정책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부산도시공사 회계규정」 제2조에 따르면 공사회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57조에 따르면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152조에 따르면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제9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절차는 입찰공고→ 기본제안요청서 교부 또는 열람 → 참여적격자 선정 → 경쟁적 대화 참여 대상자와 집단협의(기술적・재무적 요구내용 등, 필요시 현장점검) → 최종 제안요청서의 교부 및 열람 → 최종 제안서의 평가 → 낙찰자선정(제안서 평가결과+입찰가격 평가) → 계약체결의 순서로 진행된다.

나. 부산도시공사 ○○○○실에서는 2020년 5월「비전2030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용역」을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발주계획을 수립하였다. 발주계획에 의하면 해당 용역의 추정금액은 223,452천원이었으나 발주 당시 해당 용역의 사업비는 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비를 초과하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부족예산은 추경 때 연구개발비 124,000천원을 추가 편성하여 충당하였다.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에 의하면 구두에 따른 통지·요구·회신·승인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그런데 참여적격자와의 경쟁적 대화 개최 결과보고서(2020.6.11.)에는 경쟁적 대화의 주요 내용을 담아 최종제안서(안)을 확정·결정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당초 용역 입찰공고 시 제시한 과업지시서 내용과 동일하여 경쟁적 대화에 의해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과업지시서의 과업일정에는 착수보고회 1회, 중간보고회 2회, 최종보고회 1회로 되어 있으나, 착수·중간·완료 보고회 시 개진된 의견 및 과업의 보완 등 보고회 개최 후 결과 보고를 하지 않아, 과업지시서의 과업 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보고회 취지에 맞게 발주처의 의견이 수용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라.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은 부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12조 정책연구용역의 중복 검토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공기업 경영 정보공개시스템 및 공사 내부 시스템 등을 통하여 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나, ○○○○실에서는 2018년 12월에 발주한 「중장기 발전전략 및 조직진단」의 성과물과 「비전2030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용역」 성과물 비교 시 방향성과 전략제시 측면에서 유사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사중복 용역에 대한 검토를 발주 전에 하지 않았다.

마. 또한 같은 규정 제13조 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에 따르면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15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용역 과제로 선정이 되면 과제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1조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에 따라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같은 규정 제22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3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에 따라 과제담당관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제24조(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 상황을 점검하여 활용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실장)은

가. 「비전2030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용역」의 정책제안 과제 담당부서별 실행계획 수립여부 및 이행상황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과제별 점검결과에 따라 용역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하고,

나. 용역사업 발주 시에는 과업의 내용 중 불요불급한 내용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비 내에서 발주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비전 2030 및 중장기 경영전략 연계 조직·인력 관리 권고**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권 고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비전 2030 및 중장기 경영전략(2021.2.)」에서는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인사운영 로드맵으로 5개의 개선 방향성에 14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직무·역량 중심의 인사제도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전 2030 및 중장기 경영전략(2021.2.)」14개 추진과제 중 7개 과제(1-1. 1-2. 2-1. 5-1. 5-2. 5-3. 5-4)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개 과제(1-3. 4-4.)는 검토 중에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정부 및 부산시의 대내·외 정책에 따라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이 결정되는 구조로 사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인력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위 제안과제에 대한 단계별 조직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중장기 인력운영 로드맵을 수정·보완 하고 과제 추진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부산도시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제22조의3(순환보직)에 따르면 사장은 직원의 부패방지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해 동일부서 또는 동일직무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경우, 전문성 및 업무연속성이 필요한 직무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부산도시공사 ○○○○실에서는 순환보직의 예외에 해당하는 분야 및 직무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토목직렬과 건축직렬 및 기타직렬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면 직무 연관성을 높일 수 있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순환보직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실장)은

「비전 2030 및 중장기 경영전략」에서 제시한 인사제도 고도화 방안 중 조직의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내규에 근거가 있는 순환보직, 전문관제도, 직위공모제 등은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무국외출장 여비 산정 및 정산 소홀**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부산도시공사 여비규정」 제10조(국외여비) 국외 여행 시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27787호)」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에 따르면 여비는 여비지급구분표에 따라 지급하고,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에 따르면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4] 국외여비 지급표에 의거 지급하고,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며,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일비 또한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제23조(준비금)의 지급대상항목은 비자발급비, 여행자 보험 가입비, 예방접종비 등이 해당된다.

같은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에 따르면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담당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 하며,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숙박비 지출내역을 정산하지 않는다.

일비, 실비, 숙박비의 할인정액은 국외여비 정액지급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정액으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나, 국외여비의 집행·정산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국외항공운임을 항공사 등에 직접 송금하는 것은 가능하다.

나. 부산도시공사 ○○○○실에서는 2018~2019년 동안 국외여비를 7회 지급하였는데, 여정 중 임차 차량 이용 시 일비를 1/2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전액을 지급하였고, 기내식이 제공되는 여정에 식비를 전액 지급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기준에 따르면 출장자는 공무여행 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에 공적항공마일리지 적립·활용 등 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항공권 예약 시에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확보에 우선 활용하여야 함에도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예산절감에 활용되지 못하고 자연소멸되고 있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실장)은

「부산도시공사 여비규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하여 국외출장여비 지급과 정산을 철저히 하고, 항공마일리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영구임대주택 부속상가 관리 소홀
【기 관 명】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가. 영구임대주택 부속상가 관리 소홀 등 현황 (※일부 상가 중복 관리 소홀)

전체 부속상가 수	실제용도와 계약서상 용도 불일치	공유지 사용 부적정 등	임차관계 확인 필요	구청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 사용		
				소계	유상	무상
106호	43호	8호	5호	50호	17호	33호

나. 영구임대주택 부속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변동 현황

(단위: 원)

지구 수	상가 수	유상 임대	보증금 총액 증감 내역			월 임대료 총액 증감 내역		
			최초산정액	현재산정액	증감	최초산정액	현재산정액	증감
10개 지구	106호	64호	840,988,600	840,988,600	-	8,151,810	8,151,810	-

2. 내 용

① 상가 임대차계약 이행사항 확인 소홀

가. 부산도시공사 「임대규정」 제18조(행위금지 및 계약해지등)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입주자가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경우와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축, 증축, 신축하거나 정하여진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같은 규정 제5장(상가 등 기타시설임대) 제39조(행위금지 및 계약해지등)에 따르면 임대부서의 장은 입점자가 제18조제1항의 각호를 준용하여 입점자가 행위금지 등의 행위를 했을 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같은 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16호서식] 상가 및 복지시설 임대계약서에는 계약시 물건의 사용목적(업종)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계약서 제8조(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임차인은 기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괴 및 신규시설물의 설치 등 상가, 복리시설 및 주택단지 형상의 변경을 요하는 일체의 위반행위를 할 수 없고, 계약서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르면 임차인은 공동시설, 공용면적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점거 또는 사용하였을 때 공사는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그런데도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2지구 지하1층 1호 상가(계약자 ◎◎◎) 등 43개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용도와 실제와 달리 사용하고 있음에도, 현장확인 후 수정계약이나 변경계약을 하지 않고, 용도외 사용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2지구 지상1층 및 지상2층 상가 임차인들이 공용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공용공간 무단 점유, 건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등으로 일반 시민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지만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소명확인,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지구 상가 지상 1층의 101호～105호에는 공사가 해당 상가에 대해 2명의 계약자와 5건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지만 감사관이 현장확인한 결과 해당 상가에는 ◎◎◎◎◎ 1개 사업장(사업주 ◎◎◎)만 존재하고 있었으며, 공사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재산정 소홀

가. 부산도시공사 「임대규정」 제5장(상가 등 기타시설 임대) 제32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2항에 따르면 상가 등 기타시설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감조정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같은 규정 제5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1. 물가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보증금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주택의 일반 거래 가격과 균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개량하였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을 증감 변경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등을 증액하고자 할 때는 그 비율은 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같은 규정 시행 내규 제46조(연간임대료의 산정)에 따르면 연간임대료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고 단지별, 층별 표준상가를 선정하여 감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도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가 64호에 대해, 1991년～1996년 최초 임대차계약시 산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적정성 여부나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보고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없으며, 영구임대주택 부속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변동 현황과 같이 25년～30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고, 임대료 수입 증대나 적정 임대료 산정을 하지 않고 있다.

③ 부속상가의 구청 및 사회복지법인 제공 기준 미수립

가. 부산도시공사 「임대규정」 제35조(신청, 접수) 및 제36조(입점자의 선정) 등에 따르면 임대부서의 장은 상가 및 복리시설의 입점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임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받고, 입점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추첨의 방식으로 하고 모집결과 신청자수가 임대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구청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사용 협조요청으로 인해 공개모집 방식이 아닌 협약 등의 형식으로 공사소유 영구임대주택 부속상가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으나 유상 계약과 무상 제공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이 50호 중 17호는 유상 계약으로, 33호는 무상제공의 형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④ 부속 상가 공실 및 시설관리 소홀

가. 부산도시공사 「임대규정」 제5조의3(공가 운영) 및 제40조(다른장의 준용), 같은 규정 시행내규 제2조(연간 임대계획 수립) 및 제58조(다른장의 준용) 등에 따르면 임대부서의 장은 장기 공가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공가 운영을 위한 주택 및 상가의 연간 임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부산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제20조(판매시설등의 관리범위)에 따르면 판매(임대)시설등의 공사의 유지, 보수범위는 공용인 오수정화시설, 지하저수조등 임차인의 전용부분에서 제외한 부분에 적용하며 부속상가의 전용부분이 아닌 시설물 안전과 환경과 관련한 공용부분은 공사에서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도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임대규정」,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등 사규에 따라 합리적인 상가 공가 운영을 위한 연간 임대계획을 2018년 이후 2021년 6월까지 수립한 적이 없으며, 영구임대주택 부속상가의 시설물 유지보수 주체로 시설물 안전과 보수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지구 등 3개 지구의 부속 상가의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은

가. 영구임대주택 부속상가에 대해 실제 계약한 용도로 사용여부, 계약자와 실제 사용자의 일치여부 및 공용면적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점거·사용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임대규정」 및 계약서에 따른 조치를 하고

나. 파손된 공유 시설물이나 보수가 필요한 상가에 대해 조속히 조치를 하여 임대하거나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바라며,

다. 현재 임대중이거나 공실인 상가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적정임대료 및 보증금을 산출 후, 향후 상가 재계약시 반영하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합리적 상가 운영을 위해 매년 연간 임대계획 수립하고, 구청이나 사회복지법인과 협약하여 상가를 사용하도록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사「재산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상가의 유·무상 제공여부 및 협약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사규에 명문화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미준수
【기 관 명】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 공사 본관 청사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 및 현황

구분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①주출입구접근로	②장애인전용주차구역	③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④출입구(문)	⑤복도	⑥계단또는승강기	⑦화장실			⑧욕실	⑨샤워실·탈의실	⑩점자블록	⑪유도및안내설비	⑫경보및피난설비	⑬객실·침실	⑭관람석·열람석	⑮접수대·작업대	⑯매표소·판매기·음료대	⑰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설치 의무 여부	○	○	○	○	○	○	○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세부기준 미충족(15개)	1	3	1	3		4	3												

2. 내 용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및 제7조(대상시설) 등에 따르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및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주 등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는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및 구조·재질에 관한 세부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등에 따르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부산도시공사 ○○○○처는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주로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관리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단 또는 승강기 등 6개 영역의 15개 세부항목에 대한 편의시설이 규정에 맞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편의시설 운영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은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단 및 승강기 시설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변경·설치하고,

나. 편의시설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공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주택임대 관련 사규 정비 소홀**
【기 관 명】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① 각종 법령 개폐에 따른 사규 현행화 소홀

가. 부산도시공사 「사규관리규정」 제19조(사규의 관리) 제1항에 따르면 사규 운영부서의 장은 사규의 제정 및 개폐사유가 발생하거나 경영개선사항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3장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여 항상 실효성 있는 사규를 유지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르면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사규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매년 4/4분기중에서 사규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사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공사 사규총괄부서인 ○○○○실에서는 매년 하반기 사규운영부서의 장에게 '사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통보(2018년: 11월 28일, 2019년: 9월 3일, 2020년: 9월 28일)하여 개정 필요가 있는 사규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따라 부산도시공사 ○○○○처(現○○○○처)는 2019년 3월 19일, 2019년 10월 23일 공사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을, 2020년 10월 30일, 2021년 3월 5일 공사「임대규정」을 각각 개정하였으나, 각종 법령 개폐로 인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채 사규를 개정하는 등 사규 현행화를 소홀히 하였다.

②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가. 2015년 12월 29일 개정·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제1항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Ⅰ)(공공건설임대주택용)'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시 주택정책과도 2020년 1월 29일「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 규정」제8조(임대차계약 등) 제3항 '관리주체는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2015년 12월 29일 관련 법령 개정, 2020년 1월 29일 관련 조례 개정으로 영구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규정에 따른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공사「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시행내규」에 따른 자체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은

가.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임대규정」을 관련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고, 각종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 시 관련 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사규를 개정하기 바라며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공매입임대주택 매입 부적정
【기 관 명】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가. 공공매입임대주택 매입 절차 미준수 현황

(단위: 백만원)

건물명 (호수)	소재지 (신청인)	매입 금액	매입공고	매입신청	매입심의회		비고
					개최일자	결과	
합계		6,142					
◎◎◎ (14호)	◎◎구 (◎◎◎)		2018. 3. 13.	2018. 3. 16.	2018. 7. 12.	매입보류	신청서 제출없이 위원회 상정후 매입 (◎◎◎만 재상정)
		1,372	2018. 6. 19.	-	2018. 10. 30.	일괄매입	
◎◎◎◎◎ (22호)	◎◎구 (◎◎◎)	2,312	2018. 6. 19.	2018. 10.	2018. 10. 30.	일부매입(12호)	본부장전결로 잔여호 매입결정 (2018. 11. 29.)
					-	잔여호 매입(10호)	
◎◎빌라 (25호)	◎◎구 (◎◎◎)		2019. 2. 14.	2019. 2. 19.	2019. 5. 21.	매입부결	2회 탈락시 신청불가하지만 신청접수후 주택매입결정
		1,012	2019. 7. 10.	2019. 7. 16.	2019. 11. 20.	일부매입(10호)	
			2020. 2. 17.	2020. 2.	2020. 5. 25.	매입부결	
		1,446	2020. 9. 1.	2020. 9. 10.	2020. 10. 22.	잔여호 매입(15호)	

나. 주택매입 조건 이행 여부 미확인 현황

(단위: 호, 백만원)

건물명	매입의결	매입호수	매입금액	매입조건	이행여부확인
합계			10,720		
◎◎◎◎◎	2018. 8.20.	20	2,258	· 옥상방수 시공	X
◎◎◎	2018.10.30.	14	1,372	· 우레탄 옥상방수 시공 · 601호 에어컨 설치 · 옥상 시수인입배관 노출부 보완	X
◎◎◎◎◎	2018.10.30.	12	2,312	· 하자보수보험증권 확인 · 외기노출 보일러 보완 · 차면유리창 개폐식전환 및 투명도 조절	X
◎◎◎	2018.12.18.	9	808	· 통신단자함 확인 · 옥상 급수배관 보완	X
◎◎◎◎	2018.12.18.	16	1,457	· 옥상 우레탄 방수 보완 · 보일러 보온재 보완 · 101호 퇴거 확인	X
◎◎◎◎	2019. 5.21.	24	2,513	· 옥탑층 외부단열재 시공 · 통신주 이설	X

다. 기타 사항

건물명 (신청호수)	소재지 (신청인)	매입공고	매입신청	매입심의회		비고
				개최일자	결과	
◎◎◎◎◎ (5호)	◎◎ (◎◎◎ 등)	2019. 2. 14.	2019. 2.	2019. 5. 21.	매입부결	90백만원 (전직임원주택)
		2019. 7. 10.	2019. 7. 22.	2019. 11. 20.	일부매입(1호)	

2. 내 용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제1항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고, 부산도시공사는 공공주택사업자로서 2005년부터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매년 초 매입임대주택 매입계획을 수립 후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있고 매입여부 적정성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2018년부터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매입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입임대주택 매입계획 수립→매입공고→매입신청 접수→실태조사 및 평가→매입심의회 개최→감정평가 의뢰→매수협의→주택매입의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나. 그런데도 부산도시공사 ○○○○처, 舊○○○○처, ○○○○처에서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매입시 주택매입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매입심의위원회 직권상정후 주택을 매입하는 등 공공매입임대 주택 매입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사장 결재 없이 본부장 전결로 주택매입결정을 하는 등 위임전결내규를 미준수하고 관련 내규 개정을 소홀히 하였으며, 2회이상 매입탈락으로 매입신청 자격이 없는 주택에 대해 신청접수 후 매입하는 등 주택매입신청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과 주택매입 조건부과 이행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매입심의위원회 기피나 회피절차 없이 전직임원 소유의 주택을 매입하는 등 주택매입심의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1) 공공매입임대주택 매입절차 미준수

공사가 수립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매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주거복지처-4686(2018. 6. 8.))’에 따르면 주택매입절차는 매입신청접수→실태조사평가→매입심의회 개최→감정평가 의뢰→매수협의→주택매입 순임.

◎◎구 소재 ◎◎◎은 2018년 3월 공사에 주택매입신청이 접수된 후, 2018년 7월 개최한 1회 매입심의위원회에서 건축물저층부 구조적 문제로 인한 채광, 통풍불량 및 결로발생 우려와 입지불량 등의 사유로 매입이 유보되었으나, 공사는 주택소유자가 매입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2018년 3회 매임심의위원회에 직권 상정하여 14호를 매입하였다.

2) 부산도시공사 위임전결내규 미준수 및 개정 소홀

◎◎구 소재 ◎◎◎◎◎ 소유자가 본 건물 22호를 일괄 매입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2018년 10월 개최된 3회 매입심의회위원회에서 일부(12호) 매입 하였고 이후 타 주택의 매입협상 결렬로 매입가능 물량이 증가하자 본부장 전결로 10호 추가 매입을 결정하였다.

공공매입임대주택 매입 결정은 서민 주거안정, 주거복지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공사 위임전결내규 제4조(전결사항) 제2항에 따라 매입계획승인에 준하여 최종 결재권자인 사장의 결재를 받고 처리하여야 함에도 차하급자인 본부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위임전결내규 규정을 위반하였고, 공사「위임전결내규」에 공공매입임대주택 매입 결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관련 내규를 개정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3) 주택매입신청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소홀

공사의 ‘2020년 매입임대주택 매입계획(2차)’에 따르면 기 신청하여 탈락한 주택은 1회에 한하여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이후 동일주택에 대하여는 매입신청을 받을 수 없다.

2020년 하반기 주택매입시 이전에 2회(2019년 1회, 2020년 1회) 매입 탈락된 ◎◎구 ◎◎◎◎에 대해서는 주택매입신청을 받을 수 없는데도, 주택매입신청자격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자격자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15호를 매입하였다.

4) 주택매입 조건부과 이행여부 확인 소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 등 6개 주택 매입을 결정하면서 옥상방수 시공, 하자보수보험증권 확인 및 통신주 이설 등을 주택매입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하지만, 이후 매입전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된 매입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현장확인복명(사진 첨부 등) 없이 유선이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5) 매입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공사「매입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따르면 위원이 매도자 측과 특수한 관계가 있거나, 주택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은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9명의 위원 중 내부위원 6명은 퇴직한 공사 전 ◎◎◎◎장 ◎◎◎과 함께 근무한 특수한 관계이며,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 매입 심의건을 회피하였어야 하나 매입심의위원회 안건에 부쳐 매입하는 등 주택매입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3.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 ○○○○처장)은

가. 공공매입임대주택 매입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매입심의위원회 위원 과반(또는 전부)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기 바라며,

나. 공공임대주택매입과 관련한 공사 위임전결내규를 개정하고,

다. 주택 매입 계획수립부터 매매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법령,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 매입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라. 향후 주택 매입시 공사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들이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지방세 신고납부 관리 소홀**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부산도시공사 ○○○○처는 「보상업무규정」 제19조(토지 등의 관리)②항에 따르면 취득한 토지 등에 관한 지방세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회계규정」 제10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기타관계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2021.1.18.조직개편전 ◇◇◇실 ○○1부는 ◉◉지구에 대해 담당하고 있었으며 ○○2부는 □□□□ 물류도시에 관한 용지공급 및 분양관련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분양과 관련한 업무담당자는 「지방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20조 등에 따라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9.4.22.~4.26.(5일간) 부산도시공사 ◍◍◍◍실에서는 ◉◉지구 취득세 신고·납부 업무처리 건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준공인가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한 경우는 발급일을 사실상의 취득일로 보고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하였고 「◉◉지구 취득세 신고 · 납부 업무처리 부적정 및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부정적으로 공사의 재산손실을 초래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2부는 □□□□ 사업단지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그 결과 토지사용승낙서를 2018.10.16.발급하였으나 취득세를 누락한 사실을 알게 되어 가산세 976,650원을 포함하여 납부하였다. 구두로 내부보고를 하였다고 하나 가산세가 발생할 경우는 지출부서에 지출 의뢰시 본세와 가산세는 구분하여 알리고 처리하여야 하나 가산세 별도 표기 시 지출 반려될 것을 염려하여 전체 금액을 납부의뢰 하였다.

다음으로 토지를 분양 받은자가 건축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잔금 지급전에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취득세의 가산세 744,500원이 발생하였는데 별도의 보고없이 총액으로 지출부서에 지출 의뢰하여 납부하였으며 분양받은자가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전에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했어야 하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취득세 납부 의뢰 공문(△△△실-2880호, 2018.6.11)을 확인한 결과 취득일이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한 내에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납기가 7일 경과하여 가산세 3,190원을 포함하여 납부의뢰하였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에 따르면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에 따르면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부동산의 취득행위가 빈번이 발생하고 취득유형이 정해져 있으며 각종 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명확한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의 용역결과에 따라 확인되어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은

가. 지방세 가산세 발생 본세와 구분하여 별도 보고하게 하여 가산세 납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세금신고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시기 바라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여 담당자 외 다음 결재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세무 업무 관리 소홀**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부산도시공사는 2021.2.18. ~ 2021. 4.30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법인세 등 10,392백만원을 납부하였고 해당세액 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00백만원(지방세 10백만원 별도)을 납부하였다.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따르면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5조의2②항에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1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식등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⑦항에서 매매 · 증자 · 감자 · 상속 · 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 · 지분비율 · 보유주식 액면총액 · 보유출자총액등이 변동되는 경우로 되어 있다.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2016년 및 2019년 2회에 걸쳐 현물출자하여 보유출자총액이 변동되었고 2016년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2020년 국세청 세무조사결과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2019년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자가 유선통화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삭제 요구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선통화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법령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2016년도분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경정세액

(단위:백만원)

연번	세목	귀속연도	경정연도	적 요	금액
1	법인세	2016	2018	2016년정관택지 매각에 따른 출자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담금 경정청구	935
2	부가가치세	2017,2018	2018	일광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다 신고 및 납부건 경정청구	71
3	지방세(취득세)	2017,2018	2018	교리 진입도로 개설 공사 관련 경정청구	기각
4	법인세	2014	2020	2014년 미음지구 정산반환금 중 선수이자의 매출할인 미반영분	4,117
5	지방세(취득세)	2019	2020	시청앞 행복주택 매각부지 감면분 추징	기각
6	지방세(취득세)	2019	2020	국제산업물류도시 중복구간 정산 필지	69

나. 2018년~2020년의 경정세액을 살펴보면 연번1,4번의 경우 경정연도가 귀속시기에 비해 지연됨을 알 수 있고, 결산 등 세무조정 시스템을 통해 차기년도에 자체 시스템을 통해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추징세액 중 지급명세서 관련 법인세 납부 건은 「법인세법」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에 따르면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에 따르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100분의1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규정에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아닐 경우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닐 경우는 1억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 부산도시공사가 2016년 이후로 부산시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은 2018년을 제외하고 4년간이었고, 2019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2019년도분은 2019.12.1.에 발령받은 직원이 담당하면서 관련 법령사항과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배당소득은 기재하지 않았고 이자소득만 기재하여 부산진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2020.7월에 국세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미기재 사실을 확인하였고 배당소득 19,680백만원의 0.01%를 곱하여 최대한도인 1억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라. 감사기간 중 타공사의 회계부 인력현황과 비교한 결과 매출액 규모는 타공사에 비해 높으나 회계부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유형별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문제점(전문적인 지식부족, 시스템 개선, 상시 모니터링 강화, 사업부서와 업무협의, 정규 및 사규의 재정비,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은 인식하고 있으나 해결방안을 처리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은

가. 각종 세금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및 보고체계를 적극 구축하고

나. 회계 및 세무업무가 전문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인력 진단을 실시하여 조정하기 바라며

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지연손해금율 변동관련 규정 명확화**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개 선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재산관리규정」 제30조(임대료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평균금리에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이 정한 연체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수준으로 한다.

또한 「분양규정 시행내규」 제31조(지연손해금)에 따르면 ①지연손해금은 약정 납부기한까지 미납된 지연원리금에 약정 납부기한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곱한 후 평년과 윤년의 구별없이 365분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평균금리에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이 정한 연체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수준으로 한다.

나. 부산도시공사의 지연손해금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평균금리에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매달 대출평균금리가 변동되는 반면 도시공사는 2018년 금융위원회에서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최대3%p”인하하여 조정한 이후 코로나19로 지연손해금을 감면 결정하기 전까지 이자율을 조정한 적이 없다. 규정에 사장이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고객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지

고 회사에서는 최소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므로 변동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고객들에게는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사는 경영을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다. 또한 코로나19로 가산금리를 면제하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였고 경영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여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3개월간의 감면현황을 확인한 결과 혜택을 받은 최저금액(520원)과 최고금액(182,401,470원)을 비교하면 차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였다.

감사기간 중 8개(서울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의 타시도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연손해금 감면을 검토한 결과 인천도시공사만이 임대지연손해금을 2020년 6.5%에서 5%인하 하였을 뿐 분양토지에 대한 감면혜택은 한군데도 시행하지 않았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은

가. 지연손해금율 변동시기를 회사내규에 명확하게 명시하기 바라며

나. 코로나19 등 천재지변, 경제상황 등에 의해 지연손해금율 경감시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검토할 수 있도록 경영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상 보완정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커뮤니티센터 조성 용역 계약 부적정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① 예산의 목적외 사용

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이며,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을 편성한다.

나. 그런데도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커뮤니티센터 조성 용역은 영구임대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 없는데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사업내용도 커뮤니티센터 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인데도 예산변경 절차 없이 행사운영비로 지출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있다.

② 공사 및 물품 제조・구매 계약 임에도 용역으로 발주

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8(회계처리 등)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산도시공사 회계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공사 회계에 관하여는 이 규정과 지방공기업법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제1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것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

나. 그런데도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커뮤니티센터 조성 용역 사업의 내용은 커뮤니티센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 및 커뮤니티센터 내 비치할 물품 제조 및 구매, CI 디자인 등인데도 공사 및 물품 제조 등으로 따로 발주 하지 않고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 용역으로 한꺼번에 발주하였다. 또한 가구 및 전자 제품은 다수공급자 제품 등으로 조달 구매하여야 하나 용역으로 발주한 업체에 납품하도록 하는 등 회계 절차를 위반하였다.

③ 전기공사 분리발주 부적정

가.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제1항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제1호에 따르면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리발주의 예외로 둔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제1항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제1항제4호에 따르면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분리발주 하지 않고 함께 시공하였다. 해당 전기공사의 내용은 커뮤니티센터의 배선 및 조명설치 등의 공사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1제1호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발주 업체에서 함께 시공하는 등 전기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위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은

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의 목적에 따라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에게 분리발주 하기 바랍니다.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계약포기업체 수의계약 배제 미이행**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8(회계처리 등)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부산도시공사 회계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공사 회계에 관하여는 이 규 정과 「지방공기업법」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수의계약 시 배제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된다.

나.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 조성공사 지급자재(인공토) 구매’ 계약을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 계약으로 공고 하여 총 3개 업체가 유효한 견적을 제출하였다. 1순위 업체부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자 1순위부터 3순위 업체가 견적 착오 및 물가 상승 등의 사유나 포기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포기 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수의계약 배제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배제하고 수의계약 배제 업체는 관리 목록을 작성하여 공사 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대행 용역 절차 이행 소홀**

【기 관 명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① 적격심사 포기서 확인 절차 소홀

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8(회계처리 등)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산도시공사 회계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공사 회계에 관하여는 이 규정과 「지방공기업법」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질의응답(재정관리과-2252, 2014.6.20.) 발주자의 요구로 적격심사 포기 시 제재 가능여부 에 대한 질의 응답에 따르면 입찰자의 점수가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된다는 사실은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부서에서 인지하고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 요구하여 입찰자가 이에 따라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미제출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런데도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대행 용역사업 낙찰 결과 2개 업체가 입찰 하였고, 1순위인 ○○○○ 주식회사가 종합점수 미달로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데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 없이 업체 의견대로 포기서를 제출 받아 처리한 사실이 있다.

② 과업내용 변경절차 이행 소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당초 산출기초서 상 인건비는 팀장 1명, 상시상담사 2명, 탄력적 운영 가능한 상담사 2인으로 작성하고 매달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최초 용역 기간인 2019.5.13.~10.11.까지 지급한 금액은 총 73,560천원으로 당초 계상한 금액인 75,600천원보다 2,040천원 적었다. 인건비 실제 지급내역 및 금액이 다르므로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고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③ 설계변경 단가 적용 부적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9항에 따르면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증감된 사업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나. 그런데도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예정가격 단가인 팀장은 200천원, 상담사는 150천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인 팀장 220천원, 상담사 160천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10.11.까지 실제 지급한 인건비 내역이 다름에도 당초 산출내역서에서 연장되는 일수만 더하는 등 변경계약 절차 이행이 소홀하였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 ○○○○처장)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적격심사 실시 및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고, 과업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과업 내용을 변경하게 하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과업 내용을 이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계약 변경 시에는 단가 적용을 적정하게 하기 바랍니다.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 연찬 및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원권 이용 등 부적정**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원권을 임원이 이용

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제3항에 따르면 출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산도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정관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서 부산도시공사에 근로하는 근로자(이하 “사원” 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부산도시공사에서는 2020년 8월「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부산도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3조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원복지시설” 에 출자·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 회원권 3구좌를 구입 하였다. 회원권 이용자를 사내 우편을 통하여 1차, 2차, 3차로 모집하였고, 잔여분 12박이 발생하자 추가 모집하고 추첨을 통해 신청자 27명 중 12명의 이용자를 선정하였다.

같은 정관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해야 하며, ○○○○○ 회원권은 “사원 복지”를 위해서 구매하였는데도 임원이 사용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약 취소 및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 추가 모집과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하고 사원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임원이 이용한 사실이 있다.

② 타기관 대비 과도한 회원권 보유 개선

가. 부산도시공사에서는 ○○리조트 등 6개 리조트 회원권 총 20구좌,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일수는 총 600일이다.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 일수 600일은 총 직원 수가 254명임을 감안할 때 1년에 2박 이상 사용할 수 있고, 부산시 등과 비교하여 볼 때,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 수가 최고 23배 (○○공단 0.10, 부산도시공사 2.36)에 달한다.

나. 또한, 부산도시공사 회원권 2019년도 잔여일수는 290일, 2020년도 잔여일은 359일이다. 회원권 잔여일 수가 있는데도 2020년에 ○○○○○ 3구좌를 추가로 각 176,000천원에 구매하였으며, 1구좌 당 구매 금액을 비교하여 볼 때 다른 회원권 평균 금액(40,382천원)에 비해 구입 금액이 4.36배 가량 높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실장)은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권 이용자 모집과 선정은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투명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나. 리조트 회원권은 직원 복지를 위한 목적이 있으나 직원 수에 적정한 회원권을 보유하시기 바라며, 공공기관이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 하기를 권고합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외부강의 사전 신고 소홀**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부산도시공사 행동강령」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외부강의등 신고업무 처리지침」 제3조(허가 등), 제4조(신고)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강의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사전에 부서장(부서장의 경우 소관본부장, 임원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의 허가를 받은 후 외부강의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 요청자의 공문서 등을 첨부하여 행동강령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차세대정보시스템(NBIIS)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부산도시공사 ○○○(○○○○○○○부)와 ○○○(○○○○○○○부)은 외부강의등으로 사례금을 받았음에도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부)는 실제 수령한 사례금이 신고 시의 사례금과 상이함에도 이를 보완 신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실장 등)은

가. 신고 대상이 되는 외부강의를 할 경우, 강의 신고 및 사례금 등 보완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임원 개인 휴대전화 지원 부적정**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부산도시공사 정관」 제36조(임직원의 보수)에 따르면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받으며, 공사의 비상임 임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산도시공사 보수규정」,「부산도시공사 보수규정 시행내규」 및 「부산도시공사 복리후생규정」에는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봉급·각종 제수당·복리후생비의 종류와 금액이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런데 부산도시공사에서는 ○○ 등 ○명에 대하여 개인 휴대전화 통신비 등으로 총 8,754,536원을 지원해왔으며 이는 ○○에게 휴대전화 통신요금 등을 지원한다는 별도의 내부 근거규정 없이 ○○에게 혜택을 준 것이다. 또한 ○○ 이상 직책을 가진 자에게는 관련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매월 1일 지급되고 있는데도 ○○에게만 개인 휴대전화 통신요금 등을 중복으로 지원했으며 ○○이 일반 직원보다 외부 수행 업무가 많다는 이유라고 한다면, 부산도시공사 법인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임기동안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충분히 지원 가능한 사항이었다.

특히 직책과 업무의 특성상, 휴대폰으로 공적인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하더라도 개인 휴대폰은 사적용도와 공적용도를 혼용하여 사용될 수 밖에 없으며, 각종 부가서비스 이용료나 휴대폰 기기값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부적절하게 부산도시공사 예산으로 지원하였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실장)은

가. 별도의 내부근거 규정 없이 ○○에게 과다한 지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강검진 시 복무 처리 위반**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부산도시공사 취업규정」 제29조(공가)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그 기간 중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규정상 공가 사용 가능 항목 이외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각 사유에 따라 연차휴가·병가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는 사무직(2년에 1회), 비사무직(매년)이며, 출생연도(짝수, 홀수)에 따라 시행하고 건강검진 실시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되는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을 확인한 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신청서를 관할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건강검진대상자로 지정되면 사업주가 발급한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와 같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대상자일 때 공가 실시가 가능하며,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이 2018.1.1.부터 개정되어 2차 검진이 삭제됨으로써 일반건강검진의 2차 검진(재검진)은 공가 대상이 아니다.

나. 그런데 ○○○(○○○○처) 등 4명은 건강검진으로 정시 출근·근무를 할 수 없었음에도 공가·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지 않고 업무시간 중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처) 등 4명은 연차 등을 사용하여 건강검진을 해야 함에도 공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산도시공사 취업규정」에 의하면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9년부터 복무시스템상 공가 사용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어 실제 공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 등)은

가. 향후 공가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공가 사용 시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하여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산지복구설계서 변경 절차 이행 소홀 및 예산낭비**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산지관리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산지전용 등의 허가를 받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복구공사를 착수하기 전의 기간에 산림청장 등에게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는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도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2018.~2019.6 까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지복구 시 산지복구설계서 변경승인을 득하지 않고 당초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와 달리 복구공사를 우선 시공하여 산지복구설계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으며, 2019.7.29.에 ◉◉군에 산지복구설계서 변경 승인 신청하였으나, ◉◉군으로부터 변경승인 신청이 보완 통보되어 산지복구공사 전체 358,929㎡ 중 1,219㎡를 재시공함에 따라 6,883천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은

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 이행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계약심사 절감액 사용 부적정**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제3절(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에서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제6절(보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4에서는 계약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불요불급한 사업에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집행되지 않도록 조정하거나 억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도 부산도시공사 ○○○○처에서는 ◈◈◈◈ 시설개선공사 등 2건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심사 이후 수량증가, 공정 추가로 계약심사 조정액 보다 392백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발주한 사실이 있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은

가. 공사 발주 시 최종 금액을 확정한 후 계약심사를 요청하고, 계약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일상감사를 요청토록 개선하기 바라며,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식생유지관리 계약방법 검토 및 관리 소홀**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부산도시공사 회계규정」 제190조에 따르면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같은 법률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절에서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제3조에서는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하천축제·하천호안·도로포장·도로개설·상·하수도접합·조경·토공·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는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현장대리인은 각종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를 준공함에 있어서도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도 부산도시공사(○○○○처, ○○○○처)에서는 ‘◇◇◇◇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등 9건 공사의 설계변경 시 식생유지관리 공종 부분에 대하여 식생유지관리공사 9건 3,946백만원으로 분할하여 조경공사 도급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으며, ○○○○처에서는 ‘◈◈◈◈산업단지 조성공사’ 이식목 식생유지관리 1건 49백만원을 도급자에 준공금으로 지급하고도 수목 유지관리 공사에 대한 시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지 않았으며, 사업 준공 후 관리청 이관 시에 관리청(◉◉군)에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 ○○○○처장)은

가. 식생유지관리공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나. 공사감독 시 관련 서류를 숙지하여 현장을 점검·확인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소홀**

【기 관 명 】 부산도시공사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제9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부산광역시)에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객관적인 증빙자료(계좌입금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지급내역서로 확인)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나. 그런데도 부산도시공사 ○○○○처, ○○○○처에서는 ‘◇◇◇◇ 수목이식공사’ 등 33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체결 시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고, 매월 노무비 선지급하겠다는 적용제외 신청한 계약상대자의 신청서류를 인정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처에서는 ‘◇◇◇◇ 수목이식공사’ 등 31건의 공사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된 노무비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개인별 계좌가 아닌 동일한 계좌에 지급을 허용하는 등 지급확인을 소홀한 사실이 있다.

2. 조치할 사항

부산도시공사 사장(○○○○처장, ○○○○처장)은

가.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철저히 시행하기 바라며,

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랍니다.